

## 1. 의결주문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안전관리부담금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사무 등의 위탁기관을 변경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가. 안전관리부담금 위탁기관 변경(안 제23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)

- 1)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하던 것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함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2. 19. ~ 2026. 1. 28.) 예정
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##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한국석유공사”를 각각 “한국석유관리원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한국석유공사:”를 “한국석유관리원: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제3호 및 제3호의2”를 “제3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한국석유공사·한국광해광업공단·한국석유관리원”을 각각 “한국광해광업공단·한국석유관리원”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3조의6(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<u>한국석유공사</u> 에 위탁한다.                    | 제23조의6(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) ① -----<br>-----<br>----- <u>한국석유관리원</u> -----. |
| ② <u>한국석유공사</u> 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담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 | ② <u>한국석유관리원</u>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|
| ③ <u>한국석유공사</u> 는 매월의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<u>한국석유관리원</u>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  | (044) 203 - 5181 |